

2026년 9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서해안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조업을 실천합시다!

지도·단속 방향

- 오징어 불법포획 특별단속(7.1.~9.30.) 실시
-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보관 행위 육·해상 단속 실시
- 무허가 조업(도계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등 위반어선 감시 강화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증·개축 및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점검 강화

중점 점검사항

- (자망·통발·안강망) 어구사용량 초과, 어구실명제 미이행, TAC 위반(사매매, 미보고) 등
- (선망·개량안강망) 무허가 조업(도계위반), 어구어법 위반 등
- (저인망·트롤·채낚기) 조업금지구역 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광력 위반 등
- (공통) 포획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보관
- (어선안전)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 등 점검

처벌 규정

관련법	위반행위	처분사항		
		사법처분	행정처분*(어업정지)	과태료
수산업법	무허가 (도계위반·허가구획 이탈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안·근해·구획어업별 행정처분 상이	—
	면허·허가·신고어업 외의 어업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1차)경고 2차)취소 허가·신고 1차)취소	—
	어구실명제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30일 2차)60일 3차)90일	—
	어구 규모 (사용량, 그물코 등)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수산자원 관리법	불법어구 적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포획금지 기간 등 위반	2년이하 징역 또는	1차)20일 2차)30일 3차)40일	—
	포획금지 체장 등 위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유해어업 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30일 2차)면허취소	—
어선법	어선 상태유지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	3백만원 이하
어선안전 조업법	구명조끼 미착용	—	—	3백만원 이하

수산자원	금지기간	금지체장	비고
참조기	해당기간 아님 7.1. ~ 7.31. (근해유자망은 4.22.~8.10.) *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15cm *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꽃게	6.21. ~ 8.20. (연평도 주변 7.1. ~ 8.31.)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7.16. ~ 9.15.)	6.4cm(두홍갑장)	
갈치	해당기간 아님 (7.1.~7.31.) (북위 33도 이북 해역 한정, 근해채낚기·연안복합어업 제외)	18cm(항문장) *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참홍어	해당기간 아님 (6.1.~7.15.)	42cm(체반폭)	
살오징어	해당기간 아님 (4.1.~5.31.)	15cm(외투장) *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고등어	해당기간 아님 (2026.5.1.~2026.5.31.)	21cm *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새조개	6.19. ~ 9.30. (부산, 울산, 경남, 전남광주, 제주 6.1. ~ 9.30.)	-	
전복류	9.1. ~ 10.31. (제주 10.1. ~ 12.31.)	7cm(각장)	
넙치	-	35cm	
붕장어	-	35cm	
민어	-	33cm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



- ☑ 신고대상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구 과다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등 수산물계법령 위반자
- ☑ 신고방법 :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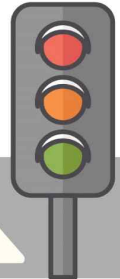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금액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기준
사법 처분	징역형	1년이상	3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상한액 3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집행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 처분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200만원
		정지	100만원
		경고	2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	20만원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사건처리 신호등 서비스 안내



- ☑ 사건처리 신호등이란?
수산물계법령 위반자 대상 단계별 사건처리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 확인방법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westship.mof.go.kr) -> 정보공개 -> 사건처리신호등 메뉴에서 확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국민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사건처리신호등

공익신고

안전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감정피해신고

국민마당

단장과의 대화

불법어업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익신고

안전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감정피해신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안내

채용공고

보도자료

기관서신자료

불법어업 FAQ

해양협약

해양수산소보

☑ 사건처리 단계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2021-02-03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2021-01-31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021-01-31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021-01-21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 서해어업관리단 처리 중
- → 관할법원 처리 중
- → 처리 완료

접수 및 처리절차 등 진행사항 문의
061-240-7971



국민을 위해하는
적극행정



서해어업관리단

2026년 7월 1일부터!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생명조끼!



구명조끼 착용실제 생존 사례

구명조끼 착용자 전원구조 사례

- ① '26. 01. 07. 12:40경 A호(4.6톤, 연안채낚기, 승선원 3명) 항해중 침수 후 침몰
- ② '26. 01. 26. 23:50경 B호(9.77톤, 연안통발, 승선원 6명) 항해중 화재 후 침몰
- ③ '26. 03. 03. 20:46경 C호(4.09톤, 연안통발, 승선원 1명) 항해중 충돌 후 선장 해상 추락

바다 추락 어업인, 수험 '팽창형 구명조끼'로 구했다



동명 앞바다 어선 충돌...
바다 추락 60대 구명조끼 덕에 구사일생



수험이 뿌린 구명조끼가 선장을 구하다...
해상 안전벨트 역할 '톡톡'



수험, '구명조끼 일상화'로
어선 안전문화 대전환 나선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90 만원

2차 위반 150 만원

3차 이상 위반 300 만원

구명조끼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방법

● 목걸이형 구명조끼 착용 방법

- 

구명조끼를 몸에 걸친 후 버클을 확실하게 채워 몸에 꼭 맞게 벨트를 조여줍니다.
- 

작동용 끈을 당기면 구명조끼에 가스가 충전되면서 팽창됩니다.
- 

가스가 부족하다면 노즐에 공기를 불어 넣어 보충해 주세요.

●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착용 방법

- 

제품을 양쪽 허리에 둘러주세요.
- 

버클을 닫아 주세요.
- 

버클의 좌, 우 조리개를 이용하여 허리에 맞게 조여주세요.



※ D링과 수동끈이 아래로 향하게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 올바른 구명조끼 보관 방법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기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기
묶어서 보관하지 않기		실린더 수시로 확인하기

사고는 순간, 생명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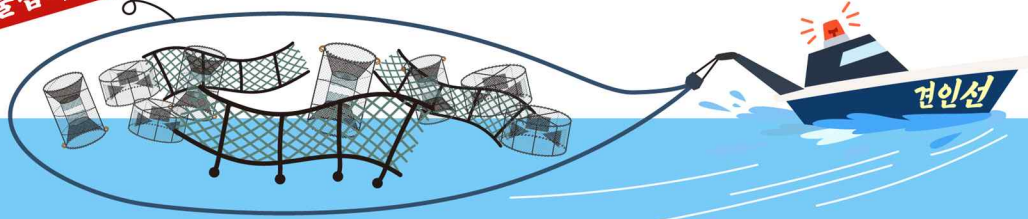


수협중앙회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불법어구



목 적

수산자원보호, 해양오염방지, 어업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대 상

사용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불법 어구·시설물

- 무허가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40조)
-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60조제1항)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76조)

시행 내용·절차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① 불법 어구 발견



② 철거 후 보관 공고
(열람부 작성)



③ 소유자
반환 · 벌금 부과



④ 1개월 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시행주체

행정관청(해양수산부, 지자체)

제도 시행

2026년 4월

청렴 서한문

< 청렴은 국민 신뢰의 시작이며, 공정한 행정의 기본입니다 >

존경하는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어업관리단장 손의학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바다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공정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업인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업인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둘째,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학연·지연·혈연 등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업인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패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언제든지 서해어업관리단 신고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청렴한 해양수산 행정을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서해어업관리단장 손 의 학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http://westship.mof.go.kr>) 접속 → 국민마당 → 신고
전화 신고 : 서해어업관리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061-240-7925)

서해어업관리단